교원징계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2조 및 정관 제59조,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법인 신동 아 학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이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규정에 의거 유지 경영하는 각급 학교 및 법인에 재직 중인 교원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법인사무국, 전주대학교, 전주비전대학교, 전주영생고등학교,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에 적용된다. 다만,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연구교수, 임시교원, 조교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11.12.22.〉
- 제3조(교원 정계위원회 설치)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이 유지 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내에 정계위원회를 둔다.
- 제4조(교원 정계위원회 구성) ① 교원 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특정 성(性)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4.23.>
 - ②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은 법인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과 외부위원(2명)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6.11.1., 개정 2022.4.23.>
 - ③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 - ④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- ⑤ 교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- ⑥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
 -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, 출석위원 중 최상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⑧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〈신설 2016.11.1.〉
 - ⑨ 징계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면직할 수 있다. <신설 2016.11.1.>
 - 1. 사직원 제출자
 - 2. 제8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징계요구를 받은 자
 - 3. 기타 교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
- 제4조의2(외부위원의 임기 등)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.
 - 1. 본 법인이 설치 · 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
 - 2. 법관,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3. 대학에서 법학,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- 4.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
 - 5.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 - ③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

다.

-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5.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[본조신설 2016.11.1..]
- 제5조(간사 등) ① 교원 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.
 -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한다.
- 제6조(징계의 종류)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하며 "중징계"와 "경징계"로 분류한다.
 - 1. "중징계"라 함은 파면,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한다
 - 2. "경징계"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.
- 제7조(장계의 효력)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으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 〈개정 2020.12.23.〉
 -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2을 감한다.
 -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한다.
- 제8조(장계의 사유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 야하고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위해제조치 후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.
 - 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정관,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신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
 - 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자
 - 3. 해당학교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시책을 비방한 자
 - 4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한 자
 - 5.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
 - 6. 문서의 허위작성 또는 부실 기재한 자
 - 7.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자
 - 8. 공금을 유용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학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
 - 9. 소속 학교장의 허가 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, 증여, 향연을 수수한 자
 - 10. 소속 학교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
 - 가. 무계출·결근 연간 3회 또는 10일 이상인 자나. 유계출·결근 연간 10회 또는 15일 이상인 자

- 다. 진단서 제출 없이 병결로 연간 30일 이상인 자라. 허가 없이 외부 출강한 자
- 11. 연구실적이 없는 자
- 12.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
- 13. 본인 과목의 자녀 수강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자, 자녀의 성적 산출근거 자료를 학과장에 게 제출하지 않은 자, 성적부여시 자녀에게 특혜를 준 자 〈신설 2019.4.1.〉
- 제9조(간이조치) 소속학교장은 교원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로서 경고조치 또는 시말서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경고조치를 포함 시말서를 3회 이상 징구한 경우에는 당해자를 징계제청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(경고시말서는 제출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한다.)
- 제10조(제척 및 기피) ① 교원 징계위원은 그 자신과 관계가 있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 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 - ② 징계대상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③ 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④ 위 제1항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 징계위원회 위원이 위원 장을 포함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출석위원이 재적의원수의 과반수가 될 수 있도 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징계 요청) ① 각급 학교(법인포함)의 장은 소속 교원 중에 제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징계요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감사 결과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감사규정 제10조, 제12조,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위원장(감사대표자)이 임용권자에게 징계요청을 하여야 한다.
 - ② 각급 학교(법인포함)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급 학교(법인포함)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[본조개정 2022.4.23.]

- 제12조(징계의결 요구 및 사유 통지) ① 임용권자가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"중징계" 또는 "경징계"로 구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를 요청한 각급 학교에서 또는 감사시행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.
 - 1. 교원 징계의결 요구서(별지 제1호 서식)
 - 2. 교원 인사기록카드 사본
 - 3. 확인서(별지 제1-2호 서식)

- 4.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거자료
- 5.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조사기록
- 6. 관계 법규·지시문서 등의 발췌문
- ② 임용권자가 교원 징계위원회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동조 제1항제1호의 교원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임용권자는 징계대상자가 교원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교원 징계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징계의결의 기간)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4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 ① 정계위원회는 정계사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 야 하며, 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정계혐의자의 충분한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진술을 포기하거나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 -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5조(징계의결 등)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 (별지 제3호 서식)에 의거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,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 및 소속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4.23.>
- ④ 임용권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 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2.4.23.〉
- 제16조(장계양정 등) 교원 정계위원회가 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정계대상자의 소행·근무성 적·개전의 정·정계요구의 내용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정계사건을 의결해야 한다.
- 제17조(재심의 청구) ① 교원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교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의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징계처분 결정서를 받은 교원 또는 관할청이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

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4.23.>

- ③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청과 임용권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<2022.4.23.>
- ④ 임용권자가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〈2022.4.23.〉
- 제18조(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) ① 교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 -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준용 규정) 이 교원장계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, 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장 계령, 교육공무원 장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11.1.>
- 제20조(운영세칙)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제21조(수당지급) 위원과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〈신설 2016.11.1.〉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의 위촉과 동시에 종전 징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교원 징계의결 요구서

인적사항	0	한글		②소	속		③직위(급)	
	성명	한자		④주민등 록 반	호		⑤재직기간	
	⑥ 주	소						
⑦ 징 계 사 유								
® 징계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								
위.	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.							
				년 월		일		
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장 (인)								
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				

[별지 제1-2호 서식]

확 인 서

1. 인적사항	①	(현	재)	2	(현 재)	3	(현 자	(현 재)	
1. 27/18	소속	(혐의딩	시)	직급	(혐의당시])	성명	(혐의당시	1)	
2. 비위내용										
	① 공 적 사 형			항 ② 징계			사항 [불문(경고) 포함]			
	포상'	일자	포상종류	시	행 청	일 자	종	류	발 령 청	
3.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대상 비위 해당 여부										
	③ 성실·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(□ 해당됨, □ 해당없음)									
4. 혐의자의 평소소행	* 근무~	*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, 직무수행태도, 주의·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								
5. 근무평가성적 (최근 2년)										
6. 기타	*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									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.										
작성책임자 (소속 및 직위) (직급) (성명) (인) 징계의결요구권자 학 교 법 인 신 동 아 학 원 이 사 장 (인)				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출 석 통 지 서

인 적 사	① 성명	한 글			2 4	느 속		
		한 자			3 Z	네위(급)		
항	④ 주소				·			
(5)	출석이유							
6	출석일시			년 -	월	일	시	분
7	출석장소							
유	의 사 항	 사정에 제출할 정당한 	의하여 서면? 것	진술을 하고 출하지 아니	자 할 때 하고 지정	세는 징계 된 일시야	위원회 개 제 출석하지	즉시 제출할 것 최일 전일까지 진술서를 이 아니하고, 서면서를 정·처리한다.
교원 징계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 년 월 일]을 통지합니다.		
			학교법인 🥕	신동아학원	년 교원 정]계위원	회위원정	· (인)
		귀하						

______(절 취 선) _____

진 술 권 포 기 서

인 적 사	○ ¼ □	한 글			② 소	속		
	① 성 명	한 자			③ 직위	(급)		
항	④ 주 소							
	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							
			년	월	일			
						성 명		(인)

학교법인 신동아학원 교원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

징 계 의 결 서

	① 소 속	② 직 위(급)	③ 성 명
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			
④ 의결주문			
⑤ 이 유			
	년	월 일	
교원징계위원회			
		위원장	(인)
		위 원	(인)
		간 사	(인)

[별지 제4호 서식]

징 계 처 분 결 정 서

① 소	속	② 직	위(급)	③ 성	명			
④ 주 문								
⑤ 이 유	별첨 징계의결	서 사본과 같음						
위와 같이	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.							
		년 월	일					
	처분권자	(처분제청권자)		(인)				
귀하								
참 고 :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 징계규정 제17조(재심의청구)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 다								